

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숲 조성 및 관리 조례안

제 안 설명

□ 존경하는 최기찬 위원장님!

그리고 선배·동료 의원님 여러분!

더불어민주당 강동구 제3선거구 출신 송명화 의원입니다.

「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숲 조성 및 관리 조례안」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.

□ 본 제정안의 제안 이유는,

○ 도시숲 등의 체계적인 조성·관리 및 이용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는 「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정에 따라 새롭게 정비된 내용을 반영하여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숲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내용과 체계를 정비하기 위함으로

○ 법률에서 규정한 학교숲을 포함한 도시숲 등의 조성관리에 관한 지방자치단체 장의 책무를 조례에 반영하여 학교숲 조성 및 학교 내 수목 관리에 대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.

□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.

- 가. 「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에서 학교숲을 포함한 도시숲 등의 조성관리에 관한 지방자치단체 장의 책무를 규정함에 따라 학교 내 수목 관리에 대한 내용을 담은 「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숲 조성 및 관리 조례」로 조문 제정
- 나. 조례의 용어 및 관련 조항 정비
- 다. 학교숲 조성·관리계획 수립 근거 규정
- 라. 학교숲 조성·관리 심의위원회 구성·운영 조례 정비
- 마. 학교숲 조성의 행정적·재정적 지원 근거 규정

□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 내용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.

□ 존경하는 교육위원회 위원님 여러분!

- 본 제정안의 취지를 깊이 헤아리시어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 바랍니다.

□ 감사합니다.